

# 7월세무일지

## 2007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

이번호부터는 국세청에서 발간된 「생활세금시리즈」책자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세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글 쓰는 순서는 ①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, ②사업자와 세금신고, ③봉급생활자와 세금, ④주택과 세금, ⑤부동산과 세금, ⑥유익한 세금정보, ⑦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순으로 연재합니다.

### 1. 기초 세금상식

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.

#### ☞ 부가가치세

- 상품(재화)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(용역)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.
- 그러나,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·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  - 곡물, 과일, 채소, 육류,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·연탄 무연탄, 복권의 판매·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
  -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, 강습소,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
  - 도서, 신문, 잡지(광고제외)

#### ☞ 특별소비세

-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.
  - 카바레, 나이트클럽, 요정, 싸롱,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
  - 보석, 귀금속 제품 판매(1개당 200만원 초과분)
  - 고급가구 제조(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)
  - 고급사진기, 고급시계, 고급모피 등의 제조(1개당 200만원 초과)

#### ☞ 소득세

-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  - 한 해의 소득(즉, 1. 1~12. 31까지의 연간소득)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.1~5.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 7월세무일지

## ☞ 근로소득세 원천징수

○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 신고·납부기한 안내

구 분	사업자	신고·납부기한		신고·납부할 내용
부 가 가치세	법 인 사업자	1기예정	4.1~4.25	1.1~3.31의 사업실적
		1기확정	7.1~7.25	4.1~6.30의 사업실적
	개 인 사업자 (일반·간이)	2기예정	10.1~10.25	7.1~9.30의 사업실적
		2기확정	1.1~1.25	10.1~12.31의 사업실적
		1기확정	7.1~7.25	1.1~6.30의 사업실적
		2기확정	1.1~1.25	7.1~12.31의 사업실적
※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(일반과세자에 한함) - 예정신고 : 신규사업자,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자, 총괄납부자, 사업자단위 신고·납부자,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- 사업부진자,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 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				
소득세	개 인 사업자 (과세·면세)	확정신고	다음해 5.1~5.31	1.1~12.31의 연간 소득금액
		중간예납 (11.15고지)	11.1~11.30	중간예납기준액의 1/2
특 별 소비세	과 세 유흥장소 투전기 설치장소 귀금속상 가구제조업 등	다음달 말일까지		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1개월의 입장인원  1개월의 판매금액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
사업장 현황신고	개 인 면세사업자	다음해 1.1~1.31		1.1~12.31의 면세수입금액
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	원천징수 의무자	일반사업자	다음달 10일	매월 원천징수한 세액
		반기납부자	7.10/1.10	

## 2. 사업자등록 안내

☞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.

### 구 비 서 류

-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
- 사업허가증,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(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)
-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-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도면1부(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)
- ※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,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.

☞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.

○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
☞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○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.

- 개인 : 공급가액의 1% (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.5%)
- 법인 : 공급가액의 1%

○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
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.

☞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.

○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.

### 간이과세 적용기준

○ 연간 매출예상액이 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
○ 4,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• 간이과세 배제사업

- 광업, 제조업(과자점, 떡방앗간, 도정제분업, 양복·양장·양화점은 가능)
- 도매업(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), 부동산매매업
-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
- 전문직사업자(변호사, 심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업 등)
- 기타 사업장 소재지, 사업의 종류·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자

• 일반과세자의 다른 사업(다만, 개인택시·용달차운송업, 이·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)

•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

# 7월세무일지

## 3.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

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.

- ☞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-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,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  -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.
- ☞ 관련 법규의 허가·등록·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- 허가·등록·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허가증·등록증·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- 따라서 약국·음식점·학원 등 허가,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☞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.
  -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,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,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.
  -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,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,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,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  -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☞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.
  -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☞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.
  -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- 구비서류 :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(☎1588-0060)에 문의

## 4. 사업자 유형

- ☞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
  -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.
- 개인사업자
  -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·폐

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
### ○ 법인사업자

-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
### ♣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

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. 다만,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.

### ○ 과세사업자

-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.

### ○ 면세사업자

-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.

### ♣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

- 개인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.

### ○ 일반과세자

- 연간매출액이 4,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10%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,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,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간이과세자

-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2~4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세액의 20~40%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.

####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

구 분	개인기업	법인기업
납부세금	소득세	법인세·소득세
세율구조	8~35%(4단계)	13~25%(2단계)
납세지	사업자 주소지	본점·주사무소 소재지
기장의무	간편장부 / 복식부기	복식부기
외부감사제도	없음	자산총액 70억원이상 법인